

의안번호	2204740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F43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투자분까지 2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2,624억원, 2026년 9,164억원 등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2조 1,788억원(연평균 1조 89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누적	연평균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) ¹⁾	-12,624	-9,164	-21,788	-10,894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- 2023년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5년 투자분까지 2년 연장 <2024년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변화> 당기분(%): (일반) 대 1→3, 중견 5→7, 중소 10→12 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→6, 중견 6→10, 중소 12→18 증가분(%): (일반 / 신성장·원천기술) 3→10 (국가전략기술) 4→10 <2025년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변화> 당기분(%): (일반) 중견 5→7, 중소 10→12 (신성장·원천기술) 중견 6→8, 중소 12→14 (국가전략기술) 대 3→15 중견 6→15, 중소 12→25 증가분(%): (일반 / 신성장·원천기술) 3→10 (국가전략기술) 4→10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발생
 - 2024~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~2026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5~2026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－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2024년말까지 적용됨을 감안하여, 2025년의 경우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동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
 -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당기분 및 증가분의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인상
 - 개정안은 2023년 투자분에 한해서만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
 - 단, 2024년 투자분은 기존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나, 2025년은 차등적으로 적용

[표 2] 현행 및 개정안의 투자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현행				→	개정안(임시 투자 세액공제)			
	당기분			증가분	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3	3(1)	7	12	10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	6(3)	10(8)	18(14)	10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	15	15	25	10	

주: ()안은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적용되는 공제율

- (공제실적)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2조 799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 수준

-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대부분 법인세(1조 9,763억원)에서 발생하며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국가전략기술	8	10	8,233	8,251
계	4,455	1,496	13,812	19,76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12.2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2025년 공제액을 전망한 후,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율 인상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2025년 공제액은 2024년의 설비투자 증가율(3.7%)에 따라 증가

- 개정안에 따른 2024년 기준 공제율 변화는 다음과 같음

- 당기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) 대 1 → 3, 중견 5 → 7, 중소 10 → 12

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 → 6, 중견 6 → 10, 중소 12 → 18

- 증가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 / 신성장·원천기술) 3 → 10

(국가전략기술) 4 → 10

- 개정안에 따른 2025년 기준 공제율 변화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이 2024년말 만료됨을 고려하여 적용

- 당기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) 중견 5 → 7, 중소 10 → 12

(신성장·원천기술) 중견 6 → 8, 중소 12 → 14

(국가전략기술) 대 3 → 15 중견 6 → 15, 중소 12 → 25

- 증가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 / 신성장·원천기술) 3 → 10

(국가전략기술) 4 → 10

[표 4]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: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현행(A)		개정안(B)		A-B	
	2025	2026	2025	2026	2025	2026
중소기업	5,204	5,500	6,254	6,604	-1,050	-1,104
중견기업	1,747	1,841	2,446	2,583	-699	-742
대기업	16,610	9,029	30,641	18,637	-14,031	-9,608
계(C)	23,561	16,370	39,341	27,825	-15,780	-11,455
세수효과($C \times [1 - 0.2]^{1)}$)					-12,624	-9,164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투자분까지 2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2,624억원, 2026년 9,164억원 등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2조 1,788억원(연평균 1조 89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누적	연평균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) ¹⁾	-12,624	-9,164	-21,788	-10,894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